

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00. 1. 7 조례 제243호
개정 2005. 10. 5 조례 제623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2조(지정기준 및 대상)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 <개정 2005. 10. 5>

1.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
2. 청소년 유해 매체물, 약물 등의 판매·대여·유통·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
3. 관할 지역주민 1천인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
4.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
제3조(통행제한시간) 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2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로 하고,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는 1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모, 친권자,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.

제4조(지정절차) ① 시장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공청회,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,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정해제)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 여건변동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6조(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) 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출입구와 주요지점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청소년통행제한구역 운영)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청소년의 통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해당지역의 감시단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선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8조(협조체제 유지) ① 시장은 청소년통행제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관서 교육청·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해당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의 소속직원에게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23호, 법무행정 처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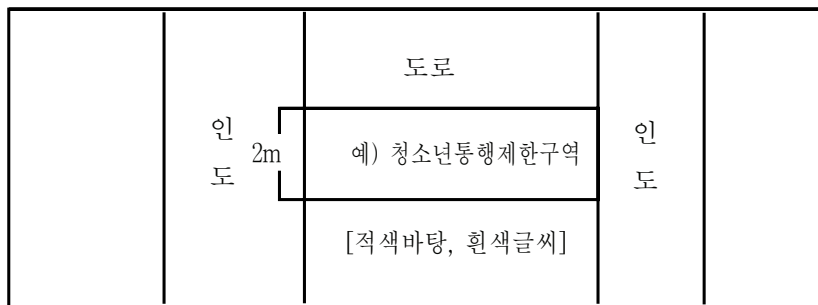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[별표]

청소년통행제한구역 등 표시

○도로상 표시

-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모두의 도로면에 「청소년통행제한구역」 표시
- 2m내외의 폭으로 적색바탕에 흰색글씨로 지워지지 않도록 Red Zone임을 표시



○안내표시판 설치

- 안내표시판에는 구역명칭과 약도 및 운영주체를 표시함.
- 표시문구 방식은 통행인의 눈에 분명하게 떨어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(예) 흰색바탕에 적색글씨로 기재하되 운영주체 표시란은 녹색바탕에 적색글씨로 표시
- 안내표시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 내의 담장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,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특히,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 등 조치
-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되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

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(예 시)

